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0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5. 15.
판 결 선 고	2014. 6. 19.

주 문

1. 피고가 2001. 9.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지세 13410-11394)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 및 압류 등기

피고는 2001. 9. 2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1. 9. 25. 압류(지세 13410-11394,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지방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지방세 부과·징수 문서의 보존기간 및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체납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서류들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매통지서를 원고가 2001. 3. 9. 수령하여 이미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5. 4.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가 납세고지로부터 12년이 경과하도록 체납세액이나 압류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체납 지방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0. 9. 22. 원고가 지방세 90,544,56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3. 7. 원고에게 위 체납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1. 3. 9. 이를 수령하였다.

2001. 4. 26.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01. 7.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원고의 확정된 체납세액을 아래 표 연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98,595,330원으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1. 7. 24. 매각대금 배분에 따라 73,994,180원을 받아 가산금 34,049,960원을 우선징수한 후, 나머지 39,944,220원은 본세에 배분하였다.

2) 공매 이후 원고의 잔여 체납액은 24,601,150원이고, 그 이후에도 아래 표 추가 표기와 같이 원고는 2001. 6. 및 2001. 8. 2건 22,23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2001. 9. 25. 원고의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단위:원)

세목	연번	과세년월	과세대상	본세	가산금	체납합계	배분충당액
종합토지세	1	1995. 10.	광주 북구 B	964,100	700,980	1,665,080	700,980
	2	1996. 10.	광주 북구 B	647,930	439,500	1,087,430	439,500
	3	1997. 4.	세무조사 추징분	645,620	370,760	1,016,380	370,760
	4	1997. 10.	광주 북구 B	1,097,890	614,560	1,712,450	614,560
	5	1998. 10.	광주 북구 C 외	373,450	112,730	486,180	112,730
	6	1999. 10.	광주 북구 C 외	594,260	149,500	743,760	149,500
	7	2000. 10.	광주 북구 C 외	461,600	61,620	523,220	61,620
재산세(건축물)	8	1997. 6.	광주 북구 C	16,240	790	17,030	790
	9	1998. 6.	광주 북구 C	17,840	870	18,710	870
	10	1999. 6.	광주 북구 C	15,840	780	16,620	780
	11	2000. 6.	광주 북구 C	15,980	780	16,760	780
주민세	12	1997. 10.	양도소득세할주민세	38,472,340	22,236,650	60,708,990	59,821,880
	13	1998. 4.	양도소득세할주민세	80,280	4,010	84,290	4,010
	14	1998. 10.	양도소득세할주민세	3,867,270	1,678,160	5,545,430	1,678,160
	15	1998. 10.	양도소득세할주민세	12,959,260	5,624,280	18,583,540	5,624,280
	16	1999. 4.	양도소득세할주민세	550,920	199,400	750,320	199,400
	17	1999. 4.	95년귀속종합소득세할주민세	1,399,940	506,530	1,906,470	506,530
	18	2000. 8.	개인균등할주민세	5,620	270	5,890	270
취득세	19	1996. 12.	광주 북구 D	81,170	4,050	85,220	85,220
	20	1997. 9.	광주 북구 E	2,277,820	1,343,740	3,621,560	3,621,560
소계				64,545,370	34,043,560	98,588,930	75,094,160
재산세(건축물)	추가	2001. 6	광주 북구 C	15,580	760	16,340	
주민세	추가	2001. 8	개인균등할주민세	5,620	270	5,890	
소계				21,200		22,230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995. 8. 16. 세액 체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02. 2. 8. 압류가 해제되어 2002. 2. 9. 위 등기가 말소되었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 외에도 2004. 1. 29. 광주 광산구, 2004. 5. 20. 광주 서구의 지방세 체납 각 압류등기 및 2011. 11. 23. 대한민국의 재산세 체납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원고는 2004. 5. 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5.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지방세 납입고지서 송달 여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원고 소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매통지서를 원고가 2001. 3. 9. 수령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5. 4.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지방세 부과·징수 문서의 보존기간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 경우 징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문서의 처리가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추가된 원고의 체납 세액이 존재하므로,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체납세의 납입고지서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여러 건의 체납세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4. 5.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지방세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지방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박성남

판사 신유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광산구 F 제101동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19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광주 광산구 G 대 26,685.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9층 제1901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84.5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6,685.6분의 35.671

2. 광주 북구 C 대 264㎡

3. 광주 남구 H 대 25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관계 법령

■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수사·재판·정보·보안관련 기록물중 관할전문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기록물에 한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분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정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④ 보존기간이 준영구로 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0년이 경과하면 20년마다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별표 2]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보존기간	대 상 기 록 물
영 구	1.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중요 기록물 2.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록 3.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4.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5.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6. 정책자료집·백서 기타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7.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 물 8. 대통령, 국무총리, 외국의 원수 및 수상관련 기록물 9.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확인·증빙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0. 국가정보원장,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11. 기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준 영 구	1. 비치기록물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폐지 기타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기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2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0 년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영구보존대상 외의 주요 사업에 관한 기록물로서 역 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은 기록물 2. 관계법령에 의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계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국가정보원장,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4. 기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 년	1. 20년 이상 보존대상기록물 외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관계법령에 의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기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 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관련 기록물 외의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 3. 관계법령에 의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빙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기타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 년	1. 주요업무 외의 일상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 2. 기타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 년	1. 주요업무 외의 일상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증빙자료·참고자 료 또는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기록물 2. 기타 1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5-27

■ 사무관리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 또는 접수한 즉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끝.